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47호, 2023. 12. 26. 공포, 2024. 4. 27.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2027년 5월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국토교통 분야 청년 주거지원 전담 추진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청년 주거지원 전담조직을 이관하며, 공항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두는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토교통 분야 청년정책 총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청년정책총괄팀을 신설하며, 해외건설 투자개발 활성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스마트도시팀

을 폐지하며,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공정건설지원팀의 명칭을 변경하고,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토교통부 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청년정책 추진 등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토교통부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직원 고충상담 등 국토교통부 내 직원 복무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7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2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99. 99. ~ 99. 9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청년정책담당관”을 “청년정책총괄팀”으로, “서기관으로 보한다”를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정책담당관”을 “청년정책총괄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토교통 분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 대응전략 수립 및 정책 총괄·조정

제7조제7항 중 “도시재생과·스마트도시팀”을 “도시재생과”로, “서기관으로, 스마트도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를 “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10항 제10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14항 제28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제14호, 제21호 및 제22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이하 이 항에서 “국가시범도시”라 한다)의 지정·운영 및 개발

16.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리

17.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등과 관련된 관계기관 협의

18.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에 관한 사항

19. 국가시범도시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20. 국가시범도시 관련 연구·개발

같은 조 제18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7항 중 “주거복지정책과”를 “주거복지정책과·청년주거정책과”로 한다.

같은 조 제13항 제4호 중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고령사회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신혼부부”를 “고령층”으로, “청년”을 “청년, 신혼부부”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개선”을 “개선(주거복지정보체계 운영 및 개선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중전의 제14항) 제3호를 삭제한다.

⑭ 청년주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2. 저출산 정책 중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 주거 관련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위한 부처 협업체계 구축·운영
4. 산하기관 등 청년주거 전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청년 주거정책, 주거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및 분석 지원
6. 청년 주거정책 과제 발굴·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총괄
7. 주거복지정보체계 운영 및 개선
8. 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특화 공공임대의 공급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대학기숙사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10. 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비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16항 제6호 중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고령자”로, “사항”을 “사항(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같은 조 제17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4항 중 “해외건설지원과·공정건설지원팀”을 “해외건설지원과·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건설현장준법감시팀”으로, “공정건설지원팀장은”을 “각 팀장은”으로 한다.

같은 조 제7항 제15호 중 “북미·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북미·유럽”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북미·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북미·유럽”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북미·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북미·유럽”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북미·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북미·유럽”으로 한다.

같은 조 제8항 제6호 중 “아시아·유럽·중동·오세아니아·중남미·북아프리카”를 “중동·중남미·아프리카·오세아니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아시아·유럽·중동·오세아니아·중남미·북아프리카”를 “중동·중남미·아프리카·오세아니아”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아시아·유럽·중동·오세아니아·중남미·북아프리카”를 “중동·중남미·아프리카·오세아니아”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아시아·유럽·중동·오세아니아·중남미·북아프리카”를 “중동·중남미·아프리카·오세아니아”로 한다.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공정건설지원팀장”을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국가별 해외 도시개발사업 전략 수립·시행 및 사업 발굴·지원
2.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건설 협력 등 건설외교 지원
3.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협업체 설치 및 운영

4. 아시아 지역 국가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파견 및 발주처 주요 인사 초청에 관한 사항

5. 아시아 지역 핵심국가에 대한 해외건설 진출 전략 수립

제13조제3항제3호 중 “총괄 및 조정”을 “편성 및 결산 총괄”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4호와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도로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같은 조 제4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도로사업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5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통행요금 및 미납통행료 징수에 관한 사항

13.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6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전국 도로보수현황 자료 및”을 “도로 유지·보수 현황 자료 및 통계”로 한다.

7. 관광도로 지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8항 제1호 중 “지능형교통체계 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술·장비”를 “기술·장비·서비스”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도로대장 정책의 총괄·조정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제56조제1항 단서 중 “4명”을 “5명”으로, “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을 “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2명”으로 한다.

제6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4(도시정비기획단) ① 도시정비기획단에 도시정비기획과를 두되,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도시정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후계획도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비 정책 및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사항
6.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에 관한 사항

7.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8.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9.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10.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1.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지원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 관련 현안 대응 및 기타 필요한 지원 사항

③ 도시정비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제61조제5항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6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5월 27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별표 7의2 중 총계 “1,022”를 “1,023”로 하고, 일반직 계 “1,012”를 “1,013”으로 하며, 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0”을 “11”로 한다.

별표 11의2 중 철도경찰주사 “74”를 “76”으로, 철도경찰주사보 “159”를 “157”로 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 제1호1)의 조직란 중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을 “주택토지

실 청년주거정책과”로 한다.

별표 20 제5호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6년 6월 30일”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61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5월 27일)

총계	3
일반직 계	3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시설사무관	1
시설주사	1
국토교통부령 제645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122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 중 “2024년 7월 31일”을 “2026년 7월 31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69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토교통부령 제82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국토교통부령 제1179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국토교통부령 제74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179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21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국토교통부령 제129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공정건설지원팀”을 “건설현장준법감시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정건설지원팀장”을 각각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13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6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청년정책총괄팀 및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은 각각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청년정책총괄팀장 및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청년정책총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해외건설지원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1명(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2의 정원 2명(철도경찰주사 2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2의 정원 2명(철도경찰주사보 2명)으로 본다.

[별표 18]

국토교통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60조의3 제2항 및 제60조의4 제3항 관련)

1.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존속기한: 2025년 3월 31일)

총계	13
일반직 계	12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1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2
시설사무관 · 철도경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3
시설주사 · 전산주사 · 철도경찰주사 · 행정주사 · 세무주사 또는 통계주사	3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철도경찰주사보 ·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3
특정직 계	1
경정	1

2. 도시정비기획단(존속기한: 2027년 5월 27일)

총계	9
일반직 계	9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1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4
시설주사 또는 행정주사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 ④ (생략)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u>청년정책담당관</u> · 재정담당관 · 미래전략담당관 · 국제협력통상담당관 · 정보화통계담당관 및 정보보호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u>서기관으로 보한다.</u>	⑤ ----- ----- ----- <u>청년정책총괄팀</u> ----- ----- ----- ----- ----- <u>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u>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u>청년정책담당관</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u>청년정책총괄팀장</u>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u>청년 주택 공급 및 운영의 지원</u>	9. <u>국토교통 분야 저출산 · 고령화 등 인구문제 대응전략 수립 및 정책 총괄 · 조정</u>
10. · 11. (생략)	10. · 11. (현행과 같음)
⑩ ~ ⑭ (생략)	⑩ ~ ⑭ (현행과 같음)
⑮ 삭제	

	<u>운영에 관한 사항</u>		<u>한다)의 지정·운영 및 개발</u>	
19. 삭 제	<u>19. 국가시범도시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u>		<u>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리</u>	
20. 삭 제	<u>20. 국가시범도시 관련 연구·개발</u>		<u>3.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등과 관련된 관계기관 협의</u>	
21. 삭 제	<u>21. 도시 내 산업육성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발전</u>		<u>4.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에 관한 사항</u>	
22. 삭 제	<u>22. 공업지역 활성화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u>		<u>5. 국가시범도시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u>	
23. ~ 27. 삭 제			<u>6. 국가시범도시 관련 연구·개발</u>	
<u>28. 스마트 실증사업 및 혁신사업 관련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u>	<u><삭 제></u>		⑬ ~ ⑯ (생 략)	⑬ ~ ⑯ (현행과 같음)
<u>29. 도시 내 산업육성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발전</u>	<u><삭 제></u>		제8조(주택토지실) ① ~ ⑤ (생 략)	제8조(주택토지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u>30. 공업지역 활성화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u>	<u><삭 제></u>		⑥ 삭 제	⑦ -----
⑮ ~ ⑰ (생 략)	⑮ ~ ⑰ (현행과 같음)		⑦ 주택토지실에 주택정책과·주택기금과·주택건설공급과·주택정비과·주택임대차기획팀·주거복지정책과·주거복지지원과·공공주택정책과·민간임대정책과·토지정책과·부동산투자제도과·부동산평가과·부동산개발산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	----- -주거복지정책과·청년주거정책과----- ----- ----- ----- ----- ----- -----
<u>⑱ 스마트도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삭 제></u>			
<u>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이하 이 항에서 “국가시범도시”라</u>				

학기술서기관·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
⑧ ~ ⑫ (생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⑬ 주거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저출산·고령사회정책</u> 중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4. <u>고령사회정책</u> ----- -----
5. <u>신혼부부</u> 등 특정계층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청년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 <u>고령층</u> ----- -----청년, 신혼부부 ----- -----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9.·10. 삭제	
11. 주거복지전달체계의 운영 및 <u>개선</u>	11. ----- -- <u>개선(주거복지정보체계 운영 및 개선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u>
12. ~ 16. (생략)	12. ~ 16. (현행과 같음)
<신설>	⑭ 청년주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청년·신혼부부</u>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2. <u>저출산 정책</u> 중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3. <u>청년 주거 관련 금융·세제 지원 강화</u> 를 위한 부처 협업 체계 구축·운영
	4. <u>산하기관 등 청년주거 전담 조직의 운영</u> 에 관한 사항
	5. <u>청년 주거정책, 주거현황</u> 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및 분석 지원
	6. <u>청년 주거정책 과제 발굴·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총괄</u>
	7. <u>주거복지정보체계 운영 및 개선</u>
	8. <u>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특화 공공임대</u> 의 공급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u>대학기숙사 확충 지원</u> 에 관한 사항
	10. <u>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비 지원</u> 에 관한 사항
	11. <u>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u> 에 관한 사항
	⑮ ----- -----.
	1.·2. (현행과 같음)
	<삭제>
⑭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3. <u>대학기숙사 확충 지원</u> 에 관	

<u>한 사항</u>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6. 삭제	
7. ~ 12. (생략)	7. ~ 12. (현행과 같음)
①⑥ 공공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⑥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청년·신혼부부·고령자</u>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u>사항</u>	6. <u>고령자</u> ----- ----- ----- <u>사항(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u>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u>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업단지 근로자 주택 등에 관한 사항</u>	<삭제>
9. ~ 12. (생략)	9. ~ 12. (현행과 같음)
①⑦ 민간임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⑦ ----- -----.
1. ~ 3의2. (생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삭제	
5. <u>청년 민간임대주택 맞춤형 지원제도 및 공급에 관한 사항</u>	<삭제>
6. ~ 13. (생략)	6. ~ 13. (현행과 같음)
①⑧ ~ ②① (생략)	①⑧ ~ ②① (현행과 같음)
②② ~ ②⑤ 삭제	

제9조(건설정책국) ① ~ ③ (생략)	제9조(건설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건설정책국에 건설정책과·건설산업과·해외건설정책과·해외건설지원과·공정건설지원팀·기술정책과·기술혁신과·건설안전과 및 시설안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u>공정건설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u>	④ ----- ----- <u>해외건설지원과·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건설현장준법감시팀</u> ----- ----- ----- ----- <u>각 팀장은</u> ----- -----.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해외건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u>북미·사하라 이남 아프리카</u> 지역 국가와의 건설 협력 등 건설외교 지원	15. <u>북미·유럽</u> ----- -----
16. <u>북미·사하라 이남 아프리카</u> 지역 국가와의 협업체설치 및 운영	16. <u>북미·유럽</u> ----- -----
17. <u>북미·사하라 이남 아프리카</u> 지역 국가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파견 및 발주처 주	17. <u>북미·유럽</u> ----- ----- -----

요 인사 초청에 관한 사항	-----
18. <u>북미·사하라 이남 아프리카</u> 지역 핵심국가에 대한 해외건설 진출 전략 수립	18. <u>북미·유럽</u> -----
19.·20. (생 략)	-----
⑧ 해외건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20.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⑧ -----
6. <u>아시아·유럽·중동·오세아니아·중남미·북아프리카</u> 지역 국가와의 건설 협력 등 건설외교 지원	-----.
7. <u>아시아·유럽·중동·오세아니아·중남미·북아프리카</u> 지역 국가와의 협의회체 설치 및 운영	1. ~ 5. (현행과 같음)
8. <u>아시아·유럽·중동·오세아니아·중남미·북아프리카</u> 지역 국가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파견 및 발주처 주요 인사 초청에 관한 사항	6. <u>중동·중남미·아프리카·오세아니아</u> -----
9. <u>아시아·유럽·중동·오세아니아·중남미·북아프리카</u> 지역 핵심국가에 대한 해외건설 진출 전략 수립	-----
10. 삭 제	7. <u>중동·중남미·아프리카·오세아니아</u> -----

	8. <u>중동·중남미·아프리카·오세아니아</u> -----

	9. <u>중동·중남미·아프리카·오세아니아</u> -----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u>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지역·국가별 해외 도시개발사업 전략 수립·시행 및 사업 발굴·지원</u>
	2. <u>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건설협력 등 건설외교 지원</u>
	3. <u>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협의회체 설치 및 운영</u>
	4. <u>아시아 지역 국가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파견 및 발주처 주요 인사 초청에 관한 사항</u>
	5. <u>아시아 지역 핵심국가에 대한 해외건설 진출 전략 수립</u>
⑨ <u>공정건설지원팀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u>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u> -----
1. ~ 6. (생 략)	-----.
⑩ ~ ⑬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3조(도로국) ①·② (생 략)	⑪ ~ ⑭ (현행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와 같음)
③ <u>도로정책과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도로국) ①·② (현행과 같음)
1.·2. (생 략)	③ -----
	-----.
	1.·2. (현행과 같음)

3. 도로예산의 총괄 및 조정	3. ----- 편성 및 결산 총괄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도로에 관한 차관사업 및 해외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12. 도로사업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삭 제>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5. 그 밖에 도로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로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2. 도로사업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9. 삭 제	10. · 11. (현행과 같음)
10. · 11. (생 략)	⑤ -----
⑤ 도로투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통행료납부관리시스템 도입 등 이용자 편의 개선에 관한	11.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통행 요금 및 미납통행료 징수에

사항	관한 사항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삭 제	13.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⑥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삭 제	7. 관광도로 지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 9. (생 략)	8. · 9. (현행과 같음)
10. 삭 제	11. 도로 유지·보수 현황 자료 및 통계 -----
11. 전국 도로보수현황 자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현행과 같음)
12.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⑧ -----
⑧ 디지털도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 ----- 디지털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 5. 삭 제	6. · 7. (현행과 같음)
6. · 7. (생 략)	8. -----
8.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장비의 성능평가 및 인증제도의 운영	- 기술·장비·서비스-----

항을 분장한다.

1. 노후계획도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비 정책 및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사항
6.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에 관한 사항
7.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8.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9.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10.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기

제61조(한시정원) ① ~ ③ (생략)
④ 삭 제
⑤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신 설>

- 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1.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지원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 관련 현안 대응 및 기타 필요한 지원 사항
- ③ 도시정비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 제61조(한시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⑤ -----

---- 2026년 6월 30일 ----

-----.
- ⑥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5월 27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국토교통부령 제645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122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령 제645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122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2의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2명은 2024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 ----- ----- ----- ----- 2026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령 제69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토교통부령 제82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국토교통부령 제1179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령 제69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토교통부령 제82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국토교통부령 제1179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스마트도시팀은 2025년 1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스마트도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스마트도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도시경제과장이 분장한다. ③ 삭제	<삭 제>
국토교통부령 제74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179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21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국토교통부령 제129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	국토교통부령 제74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179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21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국토교통부령 제129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

된 내용을 포함한다)	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u>공정건설지원팀</u> 및 디지털도로팀은 2025년 7월 21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u>건설현장준법감시팀</u> ----- -----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u>공정건설지원팀장</u> 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u>공정건설지원팀장</u> 이 분장하는 사항은 건설정책과장이 분장한다.	② ----- <u>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u> ----- ----- ----- <u>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u> ----- -----.
③ 삭제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령 제113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3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2의 철도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

경찰주사보·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u>2024년 6월 30일까지</u> 존속한다.	----- ----- ----- ----- ----- ----- <u>2026년 6월 30일</u> ----- -----.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7의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22</u>	<u>1,023</u>	+1
·	·	·	
·	·	·	
일반직 계	<u>1,012</u>	<u>1,013</u>	+1
·	·	·	
·	·	·	
철도경찰주사보·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u>10</u>	<u>11</u>	+1
·	·	·	
·	·	·	

[별표 11의2]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철도경찰주사	<u>74</u>	<u>76</u>	+2
·	·	·	
철도경찰주사보	<u>159</u>	<u>157</u>	-2
·	·	·	
·	·	·	